



제 439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래연습장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 마련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41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래연습장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 마련 (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2
※ [참고] 참고·유사 입법례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노래연습장 내 마약 관련 범죄 행위 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	개정안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 1. ~ 6. (현행과 같음)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이하 “현행법”이라 함)상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함.

현행법 제27조제1항²⁾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노래연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폐쇄 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습장업자”라 함)의 등록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주로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공익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음.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³⁾(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함)

-
-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고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 10. (생략)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에서는 마약류의 투약·제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위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일 뿐, 범죄가 발생한 장소(노래연습장) 자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아님.

이로 인해 밀폐된 방 형태의 구조를 가진 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가 마약 관련 범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업소에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취소,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청 보도자료⁴⁾에 따르면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시행 결과 마약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경찰청, 2025, “2024년 클럽 등 마약사범 역대 최다 인원 검거,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

사범을 437명을 검거하였는데,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과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이 범죄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봄.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⁵⁾는 수사기관의 장이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사용·제조·취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행정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업을 규율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해야 하는바,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 통보 이후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단순히 “「마약류관리법」상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로 규정할 경우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제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의 장으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재판 등을 통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는 절차적 한정 문구를 신설·보완하여 제재처분의 객관적 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된 때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유사 입법례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6)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는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량한 업주가 책임져야 할 우려가 있어 개정 및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

6) “[참고] 참고·유사 입법례” 참조

참 고

참고 ·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조문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9. (생략)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